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22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: 2015. 11. 10.
제 출 자: 광진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,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, 건강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

- 최저생계비 120% 미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
⇒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

나. 지원범위 확대

- 건강보험료 부과금 월 1만원 이하 ⇒ 월 1만 5천원 이하

다. 지원기준 정비

- 광진구 거주기준 6개월 이상 및 지원대상자로만 구성된 가구
- 지원대상가구
: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세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편성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(2015. 10. 16. ~ 11. 5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”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”을 “제2조 제10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차상위계층"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1만원”을 “1만 5천원”로, “다음”을 “6개월 이상 광진구에 거주하며, 다음”으로, “호에 해당하는”을 “호 대상자로만 구성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노인거주”를 “노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1만원”을 “1만 5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소득·재산 등 자산의 변동이 있어 월 보험료가 1만 5천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월별 지역건강”을 “월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자의”를 “사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보험료" 라 한다)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2조제10호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차상위계층"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차상위계층"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</p> |
| <p>제3조(지원대상) ①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(이하 "지사"라 한다)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</p> <p>1. 65세이상 <u>노인거주</u> 세대</p> | <p>제3조(지원대상) ①----- 따른 ----- ----- ----- 1만 5천원 ----- ----- 6개월 이상 광진구에 거주하며, 다음 -- 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- -.</p> <p>1. ----- 노인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, 재산상황,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</p> |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지원예산 확보)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<u>의한</u>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</p> |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예산 확보)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8조(보험료 지급방법) (생략)</p> | <p>제8조(보험료 지급방법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9조(환수 등)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<u>의한</u>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.</p> | <p>제9조(환수 등) ①----- ----- <u>따</u> <u>른</u> ----- -----.</p> |
| <p>②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<u>의하여</u> 징수한다.</p> | <p>②제1항에 <u>따라</u> ----- -- <u>사람이</u> ----- ----- ---- <u>따라</u> -----.</p> |
| <p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<u>의한다</u>.</p> | <p>제10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 |
|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</u>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11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</u> <u>에</u> ----- -----.</p> |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됨에 따라 2016년 예산을 기준 10,000천원에서 30,0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, 향후, 차상위계층의 증가에 따른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근거규정에 따른 1억 미만의 사업

4. 작성자

-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주사보 홍지유

사회복지과장 최종헌